
특집

시민불복중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법치주의와 시민권리를 중심으로

광장과 정치
—광화문광장의 비판적 성찰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
—참여연대의 ‘소통적 제도화’ 전략 검토

법치주의와 시민권리를 중심으로

하승우

3

〈논문요약〉

본 연구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려는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의미를 밝히려 한다. 만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시민의 생명이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책이고, 불복종행위가 그 내용을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이고 공공연하며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 즉 시민불복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민이 일시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 사회의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민주 사회일수록 시민불복종을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고 그것의 보장여부가 그 사회의 민주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동적인 저항으로서만이 아니라 도래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실천전략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의미를 주장하려 한다.

: 시민불복종, 법치주의, 시민권리, 한나 아렌트, 민주적 법치주의, 직접행동, 시민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도래할 민주주의

1. 들어가며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은 시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법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대한 신뢰와 그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정치행위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아직도 낯선 개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상가 롤즈(J. Rawls)를 비롯한 시민불복종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시민불복종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국가에서나 가능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시민이 정책이나 법률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반대의 의도만 품어도 체포되거나 구속되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자연히 사회운동도 개별 법률이나 정책을 바꾸려는 시민불복종보다 체제의 붕괴를 운동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불복종운동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도덕적, 정치적 정의를 위해 또는 잘못된 법률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기꺼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형성된 대중적인 저항은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을 널리 확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려는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만일 시민불복종운동의 대상이 시민의 생명이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정책이고, 불복종행위가 그 내용을 동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도적이고 공공연하며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과 같은 학자들은 자기확신을 가진 법치국가라면 시민불복종을 필수적인 정치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 즉 시민불복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민이 일시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의 핵

심적인 정치적 권리로 얘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시민불복종을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고 그것의 보장여부가 그 사회의 민주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본다.

특히 한국처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의 권리가 더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그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다. 한편으로 그것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법치주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판단해왔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실현을 가로막는 한국의 열악한 정치현실이 시민불복종운동의 흐름을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수동적인 저항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실천전략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의미를 주장하려 한다.

2. 시민불복종에 관한 기존 논의들

미국의 사상가 소로우(H. D. Thoreau)는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 (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라는 글에서 불복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했다. 소로우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키크 2005, 54)”면서 인간의 양심과 권

1) 몇몇 국가들은 이를 실제로 제도화하기도 했다. “독일의 헤센주 헌법 제147조 1항은 ‘헌법에 위반하여 행사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개인의 권리이며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7년의 브레멘 주 헌법, 1947년의 마르크-브란덴부르크 헌법, 1950년의 베를린 헌법도 저항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나아가 1968년의 제17차 개헌법률에 의하여 서독 연방공화국 헌법 제 20조 4항에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적 질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오현철 2001, 29).

리가 정부의 그릇된 정책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정부가 시민의 정의로운 주장을 들어주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은 정부의 잘못에 맞서 가혹하고 고집스러운 정도로 비타협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악을 몸소 막아야만 시민은 자신의 양심과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로우는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하게 감옥에 가두는 정부 밑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곳은 역시 감옥뿐이다.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매사추세츠 주가 마련해놓은 유일한 자리, 오늘날 가장 떳떳한 자리는 감옥이다(커크 2005, 62)”라고 주장하며 시민불복종의 길을 열었다.

소로우는 시민이 최선을 다해 권력에 갖든 악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때때로 그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소로우는 미국의 노예폐지론자인 존 브라운(J. Brown)을 옹호하면서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커크 2005, 48-49; 오현철 2001, 57-58).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특성으로 비폭력을 강조한 것은 소로우의 뜻을 이어받은 인도의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M. Gandhi)의 ‘사티아그라하(satyagraha)운동’ 이었고, 이를 이론화한 사람은 롤즈였다. 롤즈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면서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공공성과 공개성, 의도성, 비폭력성을 그 요소로 꼽았다(오현철 2001, 37-41). 롤즈는 사회계약론을 따르는 자유주의 전통 속에 시민불복종 개념을 이식하면서 인간의 자연적 의무가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따른 정치적 의무보다 앞선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적 책무는 그가 자발적으로 공정성의 원칙에 동의해야만 성립” 되고 만일 그가 어떤 정책에 불복종을 하더라도 “특정한 (정의로운) 국가의 한 일원이 되기로 동의한 것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준수할 정치적 의무는 성립할 수 있어도 책무는 부과될 수 없다(맹주만 2005, 298)”고 봤다.

이런 롤즈의 주장은 “개인의 자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치권력에 위임될 뿐이며, 정치권력은 이를 확대시킬 의무가 있다(로랑 2001, 50)”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그런 불복종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의를 지향하고 공개적으로 운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국가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정치행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롤즈의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부패와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장치이고, 반대로 불복종은 그런 역할을 자임한다는 전제 속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롤즈는 과거 한국의 독재정부처럼 억압적인 정부하에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줄 현실적인 정치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맹주만 2005, 288)”이다.

이렇게 시민불복종의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롤즈의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코헨(Carl Cohen)이나 라츠(Joseph Raz), 싱어(Peter Singer), 스마트(Brian Smart) 등은 롤즈가 전제하는 공동의 정의관이나 비폭력, 처벌의 감수와 같은 조건들을 비판하기도 한다(오현철 2001, 80-106). 그런데 만일 롤즈의 말처럼 시민불복종이 입헌민주주의 제도가 갖추어진 곳에서만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시민이 권력에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 학자들은 시민불복종과 비슷한 개념으로 직접행동(direct action)을 얘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카터(A. Carter)는 민주주의의 결손을 보완하고 시민이 권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힘을 직접행동에서 찾는다. 카터는 자유민주주의가 소수의 특권집단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소외된 집단들—빈곤계층, 여성, 소수민족 또는 소수인종 집단, 원주민, 노약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난민—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직접행동에 호소하곤 했다(카터 2007, 39)”고 본다. “직접행동은 초기에 아나키즘—생디칼리즘과 관련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초반 해도 폭력의

의미를 띤 용어로 생각” 되었지만 1950, 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행동’ 흔히 ‘비폭력’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간디류의 시민불복종, 그리고 인종주의와 핵무기 및 그 후 베트남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의 의미를 나타냈다(카터 2007, 46).” 이렇게 서구의 68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직접행동은 시민불복종과 비슷한 개념 혹은 시민불복종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유사성에도 현대의 직접행동은 “현실의 구체적인 욕구에서 시작해 대중의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정치전략은 이런 주체의 능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며, “변화는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하승우 2009, 190). 아나키즘과의 연관성에서 드러나듯이 직접행동은 권력과 법이 대중의 행동을 금지하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정치행위의 가능성을 본다. 즉 강자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강자를 위해 법이 해석되는 현실에서 직접행동은 대의제도 자체에 맞설 것을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시민불복종은 정체(polity)의 강화를 위해 제도화된 부조리나 정당하지 않은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행동이다(비폭력 직접행동은 시민불복종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³⁾ 그리고 때때로 시민 불복종은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된 방침이나 비윤리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나 저항으로 나타난다(박홍규 2002, 113). 이런 점에서 보면 시민

2) 특히 직접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으로써 자부심과 존엄감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타인과 연대감을 고양할 수 있”으며, “스스로 자신들에게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을 취할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카터 2007, 515)”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직접행동을 통해 대중은 자기 권력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다.

3) 박현주의 『행동하는 양심』(김동소 2009)은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불복종은 국가나 시장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문제점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능동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은 직접행동과 달리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불복종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불복종이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불복종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시민불복종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즉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며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치더라도 그런 공론(公論)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시민불복종이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관한 입장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불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일종의 ‘순교담론’이 강요되어졌고 이는 시민불복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

사실상 기존의 억압적인 정치질서가 시민불복종을 가로막는 곳에서 시민불복종은 권력과 법이 금지하는 정치행위를 시작하는 직접행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민권리의 실현에 방점을 두는 직접행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 땀수룩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자기 역할을 모색하는 시민불복종의 특성이 사라지는 딜레마를 피하기는 어렵다. 가령 시민불복종이 혁명적인 행위와 다른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 불러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⁴⁾

그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불복종을 ‘정부나 자본의 강압에 맞서 정치공동체의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개인적이

4) 오현철의 말처럼, 시민불복종은 현존하는 정치적 권위의 기본 구조 내에서 행동하지만 혁명은 기본 구조를 폐기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두 행위의 정치적 성격은 이론적·방법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오현철 2001, 49-50).

고 집단적인 시민의 정치행동'이라 정의하려 한다. 시민들이 정치공동체의 파괴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맞선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맞선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혁명을 목표로 삼는 사회운동과 다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직접행동과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의 형태와 변화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은 오래 전에 이론적으로 도입되었지만⁵⁾ 실제로 운동이 벌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 조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은 불가능한 운동이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이나 공정한 선거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규칙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법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것이 기성정치과정에 반영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해서 법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분신이나 투신자살,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만이 정권과 법률의 부당함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 정점인 1980년 5월 광주항쟁은 시민불복종을 넘어선 혁명적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 사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독재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면서 한국에서도 최초의 시민불복종운동이 등장했다. 보통 1986년에 시작된 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시초로 얘기된다(박은정 1990; 오현철 2001). 시청료납부거부운동은 방송민주화와 공정보도라는 사회정의와

5) 1964년 5월 『사상계』 제134호에 “지성의 좌표: 데모와 시민불복종권의 행사”라는 글이 실려 시민에게 불복종의 권리가 있다는 점을 논했다.

공공성을 운동의 목적으로 내세웠고 언론기본법의 폐지, 방송법의 제정,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최초의 시민불복종으로 평가된다.

이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불복종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법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시민불복종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시민불복종이 운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이 절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이 받아들여진 맥락을 살펴보고 그 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려 한다.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시민운동이 형성된 맥락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198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등장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은 ‘합법성’을 운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 전술은 시민운동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 그리고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1987년 이후에도 정권과 법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에 기초한 시민불복종을 주요한 운동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 그렇게 혁명노선과 합법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시민불복종은 체제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유효한 전술로 인식되지 못했다.

6) “당시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집시법을 지켜서는 안 될 악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라도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불복종 방식이 좀 더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경실련은 그 법을 지키으로써 오히려 법의 한계를 폭로하고 시위에서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거리 제원과 48시간 전 신고 의무, 야간의 집회·시위 금지 등 도심에서의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놓은 집시법 내에서 조금이나마 허술한 공간을 개발한 경실련의 노력으로 많은 단체들의 합법적인 시위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허승창2001, 44-45).

그러다 시민불복종 개념이 다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선거법과 관련되어서였다. 1999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여성단체가 여성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NGO의 정치참여를 금지했던 당시의 선거법을 어기자는 시민불복종운동이 제안되기도 했다.⁷⁾ 그리고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을 운동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내세웠다. 〈총선시민연대〉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해서 해당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했고 공천 이후에는 낙천대상자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낙천·낙선운동은 공직선거와 부정선거방지법에서 선거기간 중 노동조합을 제외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제87조, 낙선운동을 금지한 제 58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5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런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시민불복종을 시민사회의 화두로 부상시켰다. 사회학자 조희연은 낙천·낙선운동이 “‘비정치주의’를 표방하여 온 시민운동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민운동의 ‘합법주의’적 경향을 뛰어넘어 선거법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나아간 ‘최대주의’적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조희연 2001, 309-310). 낙천·낙선운동은 시민운동이 합법성의 틀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요구한 사건이었고, 입법부를 변화시켜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반영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학자 오현철은 공천반대운동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정계은퇴 및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112명의 공천 반대자 중 58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86명의 낙선대상자 중 59명이 낙선했다는 점(낙선을 68.6%)에서 낙천·낙선운동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지적한다.

7) “조기숙: 거기에 대해서는 제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민권 쟁취운동을 했을 때 법이 먼저 바뀐 게 아니라 시민들이 먼저 법을 어기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범여성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가 선거법을 동시에 어김으로써 현행 선거법이 바뀌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9).

더불어 선거법 제87조의 부분적 개정, 선거구 26개 감축, 국회법의 전향적 개정, 밀실공천의 비민주적 관행 제동, 지역감정 조장행위 차단(3당 서약 및 방송사 합의 유도), 선관위의 후보자 신상공개 유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평가한다(오현철 2001, 69-70).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는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운동을 이끌었던 중앙지도부 7인은 낙선운동이 “특정후보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야 했다. 그리고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수는 있었지만 대신 당선된 사람들이 입법부의 민주성을 강화시키리라 무조건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2004년에도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참여단체의 수가 900여 개에서 500여 개로 줄었을 뿐 아니라 <2004추진물갈이연대>를 비롯한 다른 시민운동의 활동과 겹치면서 2000년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적극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이 선거법의 전폭 개정이나 불복종 행위의 정당성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의 흐름은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의 시민불복종운동이 활성화되다 다시 수그러든 반면, 개인들을 중심으로 시민불복종운동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의 병역거부선언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기독교 신자 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남석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다수자에게 호소하며 법과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이남석 2004, 238). 그런데 병역거부의 근거가 평화나 반전과 같은 사회적 공공성보다 양심이라는 개인적 이유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 운동이 병역법을 거부하거나 그 법에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감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평가될 수 없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⁸⁾ 이런 개인적인 병역거부 외에

병역거부운동을 벌이는 <전쟁없는 세상>의 활동은 시민불복종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대중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외에도 2001년에 결성된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불복종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해석되기도 하고(홍철 2006), 2009년 교육부의 학력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은주 2009).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은 여전히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는 시민불복종 개념을 한국사회에서 본격화시켰다.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자신들이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민주적인 시민임을 끊임없이 주장했고 특정한 정책을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이후 촛불집회를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기 시작했고, 신문 등 언론에서도 시민불복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이후 도심집회 금지나 광장사용 불허 등과 관련해서도 불복종운동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신는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주로 단체들이 시민불복종을 선언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불복종을 자신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의 활성화에도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처벌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2009년 8월 서울중앙지검이 피낸

8) 아렌트는 양심이란 기본적으로 비정치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심과 양심의 대치라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법을 어기려는 결심이 양심에 달려 있다면, 민권운동을 펼친 킹 목사의 양심과 미시시피의 인종주의자 바네트의 양심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양심이 올바른 것으로 증명되려면 인간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은 증명될 수 없다(아렌트 1979, 74-75).

‘미최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106일 동안 촛불시위는 2천398회 열렸고 연인원 93만 2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1천 476명이 입건되어 이들 중 43명이 구속, 165명이 불구속, 1천 50명이 약식기소되었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범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혐의 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난 구속 피고인 27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고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불구속 기소자 중 10명이 집행유예, 2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2009/08/30). 또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보수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광고주 불매운동도 처벌을 받고 있다.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캠페인에 참여한 카페개설자 이아무개 씨 등 16명에게 징역 1~3년 형을, 나머지 8명에게선 300~6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한 동년 6월에 검찰은 해당 단체의 대표를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혹한 처벌을 받으면서 시민불복종운동의 불씨는 다시 꺼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이 주요한 사회운동전략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독재 시절의 사회운동은 체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받아들이는 시민불복종을 택하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의 시민운동은 합법성을 자신의 주요한 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을 택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합법성의 문제를 놓고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 팽팽히 대립하다 보니 대안적인 논의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국가와 대립하는 시민사회라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민이 아니라 계급을 운동의 주체로 삼았기 때문에(손호철 2001, 31) 시민불복종을 운동의 방법으로 택할 수 없었다. 반면 시민운동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비판이나 정책제안, 입법청원 등의 대정부활동에 치중했고 시민 개념을 중산층이라는 특수계층의 운동으로 제한했기 때문에(유팔무 2001, 226-228) 시민불복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국가

폭력이 민주화를 가로막고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 상황에서(조희연 편 2002 참조), 사회운동은 비폭력으로 '대변' 되는 시민불복종을 자신의 운동전략으로 삼을 수 없었다.

둘째, 시민불복종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지려 하는 이유는 그 법이나 정책의 부당함을 공론화시켜 폐지하려는 의도인데, 문제는 시민불복종에도 그 법이나 정책이 바뀌거나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한국사회에서 너무 크다는 점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와 독립되지 않고 정부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대립하고(황수의·강원택 2004), 국가나 시장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기능을 제한하며(손석춘 2005)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⁹⁾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능동적인 행위는 그것을 선택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할 뿐, 현실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전략이 되기 쉬웠다.

셋째,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애매함이다. 시민불복종을 시민의 불복종으로 해석할 경우 모든 시민은 불복종의 권리를 가진다. 즉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할 경우, 시민불복종은 그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결의 원리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버마스가 얘기하듯이, 다수결이란 특정한 컨텍스트 내에서만 설득력있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하버마스 1995, 112)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자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삼는 시민사회운동이 시민불복종을 자신의 운동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민주화 이후 시민불복종은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 과정에 반대하는 소수자의 직접민주

9) 이국운은 “법률가는 반드시 선발되어야만(selected) 하며, 결코 선출되어서는(elected) 안 된다. 그리고 것처럼 선발된 법률가만이 사법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논리아말로” “법치를 ‘민주’와 아무 상관없는 법률가들의 독점영역으로 관념하는 이런 사고방식(이국운 2007, 241)”이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주의 행위처럼 비취지곤 했다(박은정 1995, 87). 즉 시민불복종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해석되다 보니 과격한 전략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이 공론화의 목표로 삼는 ‘사회적 정당성’이나 ‘공공성’ 보다는 그 방식에서의 ‘폭력성/비폭력성’ 만이 주요한 사회적 논란의 중심의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4. 법치주의의 왜곡과 시민불복종의 무기력

한국사회에서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처럼 국민이 국가의 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학자 정태욱은 국가목적 중심의 법치와 인권중심의 법치,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인권중심의 법치가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법치주의 원칙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진리에 대한 존중과 같은 인권중심의 법치인데 한국사회에서는 국가보다 상위의 보편적인 원리가 부정되고 국가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사람 편집부 2009, 12-19).

정치철학적 정의를 따르자면 법치주의는 법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비롤리(M. Viroli)는 다른 사람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고 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라고 주장한다. 비롤리는 고전적인 공화주의자들이 “공정한 법에 따라 개인적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이고,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행동에도 동일하게 가해지는 법적 제한은 개인들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유일한 방패막” 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지적한다(비롤리 2006, 44). 그리

고 공화주의자들은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직접 만들거나 대표를 통해서 만들거나 간에—이 자유로운 삶, 즉 타인(한 명 또는 소수 또는 다수의 타인들)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는 삶을 누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다른 수단들과 함께)”이라고 주장했다(비롤리 2006, 103). 즉 법치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고 따라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에서는 법 자체만큼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과정이 왜곡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법 앞의 평등과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전제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바로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90년대까지도 공정선거감시단이 활동할 만큼 선거과정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았고 지금도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거를 치르긴 하지만 보스 중심의 정당체제는 국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몸싸움과 욕박지름의 장으로 만들었다. 의회의 정치적 갈등은 ‘입법부 대 행정부’가 아니라 ‘정부·여당 대 야당’의 구도로 진행되어서 의회는 독자적인 입법부의 공간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키는 장이 되었다(황수익·강원택 2004, 19-20). 시민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표현한다 해도 국회의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민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리고 행정과정 역시 정부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택했고 그런 흐름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한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하승우 2005; 하승우 2007).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는 주권재민(主權在民)과 인민주권(人民主權)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관은 언제나 민 위에 군림했고 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았다. 즉 시민은 정치의 ‘대상’이었지

정치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다. 관은 계획을 구상하고 민은 그것을 따르는 철저한 역할분담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건 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운다.

또한 사법부의 구성과 기능 역시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출되지 않는 법률가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독점하고 있다. 일제 시대부터 법률가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고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고, 그렇게 선발되었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내세우며 법률적인 해석권한을 독점해 왔다.¹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이런 보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심판의 권한이 독립을 넘어서 '독점' 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사법부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왔다.¹¹⁾

법률가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독점하는 현상의 문제점은 그 인적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2004년 12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지난 5년간

10) 이런 독점은 법관들이 자신들의 판결문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사법감시』가 '법고을X'를 통해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전국 각 지방법원장 20명, 고등법원장 6명, 그리고 언론에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한 적이 있는 고법부장판사 2명 등 총 28명의 평균 27.4년간의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건수는 평균 18건(재판장 판결문 11.2건, 배석판사 판결문 6.8건)이었다. 판사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연평균 4295.1건(인천지법, 부천지원의 경우는 무려 6857.4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대법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면 공개를 꺼리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는 법원이 자신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을까? 거의 '신성'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김 옥 2009, 140-142).

11) 하지만 진정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을까? 법학자 김옥은 법관들이 자신의 직업적 기능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원의 판결이 '옳든 그르든' 그 법적 힘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법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어떤 비판도 없이 '신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미다. 법관들은 논리적·법리적으로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 판결에 승복해야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김 옥 2009, 143). 즉 법관들은 자신의 판결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법학자나 보통 사람들의 비평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법의 중립성'이라는 옷으로 겉을 감싼 법관들은 자신의 견해가 주관적일 수 있음을 인

사법고시에 합격한 4,352명의 출신고등학교를 분석하면서 강남구의 고등학교 출신이 234명, 서초구가 13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4~2006년 3년간 새 예비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고와 강남 학군(옛 8학군)의 비율이 2004년 14.91%에서 2005년 23.9%, 2006년 27.65%로 증가했다(한겨레 2007.1.9). 또한 2007년 사법고시에서는 특목고 출신이 합격자의 17%를 차지했다(서울신문 2007/09/27). 이제 로스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 학기에 등록금 천 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 계층이 사법적인 판단을 독점한다면, 법 앞의 평등은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판결과 그 판결의 집행 여부는 이 문제의 실제적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조양호 전 회장, 두산그룹의 박용성 전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한화 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반면, KTX 여성노동자들이 500일을 넘게 싸우고도, 뒤이어 새마을 여성노동자들이 반년을 넘게 싸우고도,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랜드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구속되고 있다.¹²⁾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

정하지 않는다. 김욱의 주장처럼 정말 법관들이 중립적인 사람들이라면 왜 무작위 추첨으로 재판을 배당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으로 나눌까?

12) “지금까지 비정규직 쟁의의 100%가 간접고용 문제였다. 코스콤, 기륭전자 등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며 법원 판결도 무색하다. 법원 판결은 ‘법치’가 아니던가. 갑자기 법치가 실종되고 있다. 여기에 강남성모병원 파견문제가 불거졌다. 2006년 10월 병원 측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로 넘겼다. 그리고 2년 사용 이후 비정규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하루 전 이들을 해고하였다. 지난 2008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강남성모병원의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남성모병원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업무가 파견법이 규정한 ‘절대 금지업무’로 보이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할

고 사건의 처리를 헌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바르다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사건은 사법부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나 판결의 비민주성만이 아니라 사법부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위헌이라 판결한 사건에서 사법부의 비민주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유권자가 찬성한 정부의 사안을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가 뒤집은 것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원리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주장이다(최장집 2004, 53). 미국의 정치학자 달(R. Dahl) 역시 민주정부의 입법부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률을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달은 “선출되지 않은 기구,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의 판사 9명 중 5명에게,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권을 맡긴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달 2004, 132)”고 토로한다. 비슷하게 법학자 김옥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헌법재판소 9명 재판관들의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299명 국민대표자들의 입법적 판단보다 옳다는 보장이 있는가?(김옥 2009, 133)”라고 묻는다.

특히 시민불복종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여론화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사회에서는 그런 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처벌을 감수하고서 시민불복종을 선언하더라도 그런 정당한 요구가 정상적인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불복종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여자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불법과건이 이루어진 후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은수미 2009, 120).

이런 상황에서도 한편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여전히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으로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시민불복종운동의 과도한 전개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 더욱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법치국가의 정립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는 법질서에 대한 경시풍조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김상겸 2002, 161)”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국가 권위에 대한 불복종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불복종으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시민불복종의 엄격한 한계를 긋는다(윤영돈 2003, 103-104)”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입법부의 법개정이나 사법부의 위헌심판과 같은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서만 악법이나 잘못된 정책의 폐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런 주장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이로움이 없는 정치행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불복종이 “국가의 관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은정 1990, 81). 즉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면 시민불복종은 시민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불복종 행위는 합법성과 정당성 사이에 놓이는 사회적 갈등해결양식으로서 그 법 위반성은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적으로 관용될 것이 요청된다(박은정 1990, 92).”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민불복종의 불법성은 한시성의 틀 내에서, 즉 제도와 법의 개정으로 더 정당한 법치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본질적으로 법치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이대훈 2003, 116-117)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법학자 드워킨(R. Dworkin)은 만일 법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부조리하고 정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해결될 기미가 없다면 시민불복종이 설득의 전략만이 아니라 교통을 차단하고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강요의 전략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드워킨은 법원은 시민불복종을 가급적 무죄판결해야 하고

유죄선고가 불가피할 경우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봉철 2000, 151-155). 이런 시각들은 법원이 시민불복종을 법률조문에 따라 재판하지 말고 그 행위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잘못된 법이나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상적인 정치과정에 반영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무기력한 정치행위가 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폐쇄성과 독립성의 훼손, 판결의 편파성, 사법권력화 현상 등은 시민불복종이 확립하고자 하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면서 법률 준수와 처벌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시민불복종운동의 축소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반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불복종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시민이 법이나 법치주의를 스스로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의 기반을 허물게 된다.

5. 민주적 법치를 위한 시민권리로서의 시민불복종

미국의 사회학자 핑(A. Fung)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정치이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치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핑에 따르면, 심지어 불공정하고 평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토의민주주의는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현실개입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핑은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행동주의(political activism)같은 대결정치(confrontational politics)를 토의민주주의와 결합시켜 토의 행동주의(deliberative activism)의 토대를 닦으려 한

다. 평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해야 한다는 고전적인 정치적 규범에 도전하면서 불평등한 현실에서는 좋은 목적을 위해 때때로 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Fung 2005).¹³⁾ 특정한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만이 불평등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의 정당함에도 국가의 일방적인 법치주의와 시민권리의 충돌은 여전히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법학자 박은정이 지적하듯이 그 어려움은 법형식과 법정책적인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즉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기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를 에너지정책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민법상의 전력공급계약이라는 차원에서 다루기 쉽다(박은정 1990, 74). 만일 에너지정책이라는 문제를 건드릴 경우 법원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기 쉽고 시민불복종 행위가 던지려 했던 본질적인 물음은 판결에 가리기 쉽다. 그렇게 되면 “공격 대상이 된 법률이나 정치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항의형태의 정당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게 된다(박은정 1990, 85).” 박은정은 법형식에 따르는 법원이 시민불복종이라는 정치행위의 목

13) 평은 시민불복종이 활용하는 이런 도덕적인 계산의 원리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토의민주주의로 차용해서 토의민주주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성실성(fidelity), 자비로움(charity), 최선을 다함(exhaustion), 비례성(proportionality)이 그 원리들이다. 성실성의 원리는 다른 장점들이 실질적인 토론의 많은 단점들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믿고 현재의 제도와 정치관행이 문제를 가지나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믿는 것이다. 자비로움의 원리는 자칭 대화자가 상호이익의 규범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토의에 참여하려 한다는 점을 믿는 것이다. 최선을 다함의 원리는 자비로움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원리는 의사소통하지 않는 권력형태에 호소하기 전에 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례성의 원리는 토의 방법이 쓸모없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위범위를 규제한다. 이 행위방법의 선택은 정치적인 적대자들과 경쟁자들이 토의의 절차적인 규범과 그것에 기초한 실질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목표는 언제나 결국 적대자를 설득하거나 반대하거나 토의에 반하는 행동의 비용을 증가시켜서 토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Fung 2005).

표를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학자 오현철은 시민불복종에 대한 처벌이 “법률에 의해 위임된 법관의 재량권에 의해 가려질 것이며, 법관의 해석에 의해 시민 불복종의 민주적 성격이 관정될 것”이지만, 법관이 “법조항의 형식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적 법질서가 추구하는 의사소통적 이성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이란 궁극적으로 발전되어가는 미완의 과정이며 그 발전을 추동하는 힘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견형성과 의지형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정이 도덕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법조문 해석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법정은 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오현철 2001, 151). 오현철은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과정이나 공론화과정을 자극하고 그런 소통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박영도는 시민참여를 통한 참여적 정의가 사적 자율성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법적 정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정의 패러다임에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주의적 사법 패러다임을 넘어서 참여적 정의는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정의의 패러다임에 민주적 요소를 도입한다. 이 참여적 정의의 관점을 따른다면 법치의 확립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 법치’의 확립이다(박영도 2007, 41).

이런 과제는 시민불복종이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질서를 만들려는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저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정부나 기업이 모든 권력을 독점한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소극적인 저항만을 고집한다면 정치행위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의 정치적 의미는 개별 정책이나 법률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토의를 시민사회로 확산시켜 민주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

에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민불복종은 정치과정에 대한 압력보다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인정투쟁(Kampf um Anerkennung)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 Arendt)의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60년대 말 아렌트는 미국 정부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전쟁을 일으키는 등 의회와 국민을 속이거나 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감추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것의 정치적 의미를 과해치려 노력했다. 그러면서 아렌트는 이런 거짓된 정부정책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운동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아렌트는 불복종하는 시민이 개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밝히려는 능동적인 공동체 구성원이라 본다.¹⁴⁾ 아렌트는 “시민적 불복종은 뜻있는 시민들이 정상적 통로로는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호소가 거부당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법성과 합헌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일을 주장하여 추진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한다(아렌트 1979, 85). 모든 시민은 스스로의 주인이자 노예이기에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만일 정부가 시민을 속이고 부패하는 등 헌법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현 상태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철회하기에 시민의 불복종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14) 그런 점에서 아렌트는 양심적 거부자와 불복종 시민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불복종 시민의 실상은 조직된 소수집단이며, 공동이익이라기보다는 공동의견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이 다수에 의해 지지받을 것을 알 경우라도 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리라는 결의를 갖는다. 그들의 일치된 행동은 그들의 일치된 의견에서 나온다. 처음 어떻게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든 그들의 의견에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의견의 일치이다.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행동을 옹호하는 주장들, 즉 도덕적 명령과(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든 초월적인 것이든) ‘상위법’ 에의 항소를 시민적 불복종에 적용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아렌트 1979, 65-66).

특히 아렌트는 시민불복종운동이 “자발적 결사를 이루는 것과 같은 정신에 따라 형성” 되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주관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의 습관과 법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아렌트 1979, 112). 시민불복종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불복종 시민을 개인적인 범법자로 여기게 하고, 법원은 불복종 시민이 “다른 자들과 함께 뜻을 하며 법정에서 그를 진술하려 한다는 여론이나 시대 정신(Zeitgeist)”을 품은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법원에 위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아렌트는 정치제도 내에 시민불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불복종 시민인 소수가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로비스트와 유사한 압력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불복종이 ‘결사의 자유’라는 귀중한 헌법적 권리와 동일한 것임을 강조한다(아렌트 1979, 114-115).

아렌트에게 정치는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공적 과정이기 때문에 권력은 그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시민의 말과 행위를 가로막지 못한다.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가로막는 정부는 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다.¹⁵⁾

이렇게 보면 시민불복종은 시민이 주권에 근거해 새로운 법치주의의 확립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다. 물론 국가권력이 이런 시민의 정

15) 이탈리아의 사상가 비르노(P. Vimo)는 안토니오 네그리(A. Negri)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중(multitudo)에 접근하는 사상가이다. 비르노는 아렌트의 논의를 받아들여 정치적 행위가 타인의 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하지만 고유한 정치세계를 강조했던 아렌트와 달리 “우리가 타인의 눈에 노출됨”을, 타인의 현존과의 관계를, 새로운 과정의 시작을, 그리고 우발성, 예측되지 않은 것, 가능한 것과의 구성적인 친밀성을 발견하는 곳(비르노 2004, 83)”이 바로 현대의 노동세계라고 주장한다. 비르노는 현대의 유의미한 정치행위가 바로 시민불복종이고 시민불복종이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해방되어 다중의 정치적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비르노에 따르면, “다중이 자신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복종 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복종이다. 다시 말해서 맹종과 ‘위반’의 음울한 변증법이 바로 이러한 복종을 토대

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그 권력은 자신의 취약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네그리와 하트(M. Hardt)는 이를 ‘주권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주권권력은 자율적인 실체가 아니며 결코 절대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사이의, 보호와 복종 사이의, 권리들과 의무들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폭군들이 주권을 일방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 때마다, 피지배자들은 결국에는 언제나 반란을 일으켰고 그 관계의 양면성을 회복시켰다. 복종하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주권개념과 그 기능에 본질적이다. 따라서 주권은 필연적으로 권력의 이중체계이다(네그리·하트 2008, 395).” 따라서 시민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며 어떻게든 권력을 일자(一者)의 수중에 몰아주려는 주권의 기획을 파괴하고 모든 현존하는 주권 형태들에 도전할 수 있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사회적 삶을 부단히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소통적이고 협동적인 네트워크들과 연결될 수 있다(네그리·하트 2008, 419-421).

민주적 법치주의는 시민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법질서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만 확립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법치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시민불복종은 시민사회에 중요한 의제를 확산시키고 토의를 활성화하면서 정치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로 삼을 때에야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복종인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해체나 이민유입의 저지 등에 관한 특정 규정에 반대하면서 다중은 모든 명령적 규정행위의 감추어진 전제조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것의 유효성을 뒤엎으려고 시도한다. 또한 급진적 불복종은 제반 시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제반 시민법이 지닌 유효성의 기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급진적 불복종은 ‘제반 시민법에 선행한다’(비르노 2004, 121).”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시민불복종은 바로 엑소더스(exodus), 즉 국가로부터의 탈퇴, 탈출이다. 왜냐하면 “탈출은 놀이의 규칙을 변경시키고 적의 나침반을 땅기뜨리는 불손한 개입으로 이루어져 있다”기 때문이다. 즉 “엑소더스, 혹은 탈퇴는 ‘있을 것이라곤 우리 자신의 쇄사슬밖에 없다’라는 정식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절규의 대척점이다. 이것은 잠재적인 부에, 가능성들의 충만함에, 간단히 말해서 제3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tertium datur)는 원리에 의존한다(비르노 2004, 122).”

나 기업의 부당한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
정투쟁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민불복종
은 민주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시민의 필수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
를 실현하려는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행위이다.

6. 결론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H. Zinn)은 “시민불복종은 우리를 자극하
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서로 조직할 때,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외칠 때, 우리는 어떤 정부도 억누르지 못하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진 2008, 24)고 주장한다. 이 말은 시민불복종이 단순히 처벌
을 감수하는 도덕적인 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원리를 구성하는 능동적
인 힘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J. Derrida)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해체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데리다는 ‘도래할 민주주의로서의 민주주
의’를 얘기하며 “장래의 개방이 보다 가치있다는 것이 바로 해체의 공리로
서 해체는 이로부터 작동하게 되며 이것은 해체를, 장래 자체처럼, 타자성
에, 타자성의 무한한 존엄성, 즉 정의에 연결시(데리다·스티글러 2002,
55)”킨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질서의 고정성을 뜻하는 법치주의는 해체
와 도래할 민주주의를 목표로 삼는 시민불복종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런 대립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은 처벌이라는 불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을 행하는 시민은 언제나 불이익을 당할 위협에 처
해 있다.

한 개인이 이런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맡지 않으려면 시민불복종행위는
시민의 집단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운동은 입법과정에 대한 청원

이나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사회에 공론장을 마련하며 민주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렌트가 시민불복종을 결사의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킨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시민불복종은 단순히 잘못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서 도래할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능동적인 정치행위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참고문헌

- 김상겸. 2002. “헌법국가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시민불복종 운동과 관련하여.” 『亞·太公法研究』 第10輯. 147-168.
- 김 욱. 2009. 『법을 보는 법: 법치주의의 겉과 속』. 개마고원.
- 네그리, 안토니오·마이클 하트 지음.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2008.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 달, 로버트 지음. 박상훈·박수형 옮김. 2004.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데리다, 자크·스티글러, 베르나르 지음. 김재희·진태원 옮김. 2002. 『에코그래피: 텔레비전에 관하여』. 민음사.
- 로랑, 알랭 지음. 김용민 옮김. 2001. 『개인주의의 역사』. 한길사.
- 박영도. 2007. “민주적 인륜성과 시민참여: 이론적 고찰과 개념적 제안.” 한도현 외.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 박은정. 1990.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과 사회』 통권 제3호. 65-96.
- 박홍규. 2002. “2002년 봄의 시민불복종.” 『진보평론』 제12호. 127-148.
- 비롤리 모리치오 지음. 김경희·김동규 옮김. 2006. 『공화주의』. 인간사랑.
- 비르노, 파올로 지음. 김상운 옮김. 2004. 『다중』. 갈무리.
- 사람 편집부. 2009. “법의 지배와 이명박 정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제37호.
- 손석춘. 2005.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 손호철. 2001. “국가-시민사회론: 한국정치의 새 대안인가?”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 아렌트, 한나 지음. 김동식 옮김. 1979. 『공화국의 위기』. 도서출판 두레.
- 오현철. 2000.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 『정치비평』 제 7호. 217-239.
- _____. 2001.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서울: 책세상.
- 유팔무. 2001. “비정부사회운동단체(NGO)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 윤영돈. 2003. “소크라테스적 시민성과 시민불복종.” 『윤리교육연구』 제4집. 95-113.
- 이국운. 2007. “지금 대한민국은 법률가들이 통치하고 있다.” 당대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민주화는 실패한 기획인가, 87년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 웅진 지식하우스.
- 이남석. 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 이대훈. 2003. “시민불복종과 범치주의적 상상력: 합법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 제3호. 115-133.
- 이은주. 2009. “학력진단평가 거부는 시민불복종운동.” 『우리교육』 2월호. 33-35.
- 은수미. 2009.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제36호.
- 조희연. 2001.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운동과 낙천·낙선운동.”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 조희연 편. 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 진, 하워드 지음. 문강형준 옮김. 2008. 『권력을 이기는 사람들』. 난장.
- 최봉철. 2000. “시민불복종의 요건과 처벌의 문제.” 『저스티스』 제33권 제3호. 142-156.

- 최장집. 2004.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로버트 달 지음. 박상훈·박수형 옮김.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카터, 에이프릴 지음. 조효제 옮김. 2007. 『직접행동: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 커크, 앤드류 지음. 유강은 옮김. 2005. 『시민불복종』. 그린비.
- 하버마스, 위르겐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1995. 『새로운 불투명성』. 문예출판사.
- 하승우. 2005. “헌법이라는 틀은 자치를 담아낼 수 있나?”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읽기’ 토론회 발표문.
- _____. 2007. “배반의 거버넌스.” 『기전문화예술』 제49호.
- _____. 2009. “직접행동의 민주주의.” 지행네트워크 지음. 『나는 순응주의자가 아닙니다』. 난장.
- 하승창. 2001.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9. “여성정치시대 실현을 위한 여성유권자 운동.”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발간물.
- 홍 철. 2006. “시민불복종과 참여민주주의의 길.” 『담론 201』 제9권 제1호. 197-230.
- 황수익·강원택. 2004.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본 이익집단의 입법결정과정에서의 투입에 관한 연구』. 200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 Fung, Archon. 2005. “Deliberation before the revolution: Toward an Eth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an Unjust World.” *Political Theory*, vol.33, No.2.

투고: 2009.9.30 심사: 2009.10.20 확정: 2009.10.30